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정책방향과 과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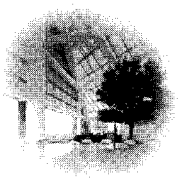

지난호에 이어서...

나, 국내 동향

국내의 경우 건축물과 관련하여 에너지 분야나 특정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시책과 지원제도는 다수 있으나, 아직까지 건물 전체로서의 그린빌딩 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유인정책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린빌딩제도에 대한 부분적 접근 또는 유사한 접근방식으 로 볼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서는 산업자원부의 제2차에너지이용합리화5개년계획(99~2003년)과 건설교통부의 건축부자재의 LCA기법개발연구(2000. 7월) 및 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사업(2000. 8월)을 들 수 있고, 지자체로서는 최근에 대전시가 2001년부터 그린빌딩제를 시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2000. 8월)한 것이 고작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그린빌딩인증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해 그 동안 사전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왔다 지난 98년 '외국의 그린빌딩인증제도 사례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였고, 99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환경정책연구회에서 그린빌딩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운영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어 그해 10월에는 건설관련 연구기관 및 건설업체, 학계,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빌딩인증제도 도입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 그린빌딩인증 제도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경부는 현재 한국능률협회인증원과 용역계약으로 시범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인증 사업을 통하여 그린빌딩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제도화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그린빌딩 관련 연구· 보급촉진활동을 통한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연구발표회, 강연회, 표준규격연구, 협의 회지발간 및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의회(회장 이명호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2000. 8. 31 환경부장관 허가)가 설립되어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4. 정책방향과 과제

가, 시범인준사업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현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통하여 그린빌딩 시범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시범인증사업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또는 실시 설계단계에서 시범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상반기중 제1차 시범인증 결과 방학동 삼성아파트를 비롯하여 9개의 프로젝트가 시범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점수를 얻었으며, 2000년10월 현재 진행중인 제2차 시범인증사업에서는 김포 고촌 제1차 현대아파트 등 7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범인증을 획득하였다.

· 상반기 인증 :

방학동 삼성아파트, 죽전5차 현대홈타운, 홍은동 풍림아파트, 월곡힐스빌 두산아파트, 의정부 호원동 현대아파트, 신도림 대림아파트, 구미 구평아파트, 수원 매탄 우람퍼스트빌, 부산화명 코오롱타운2차 아파트(이상 9개 프로젝트)

· 하반기인증 :

김포 고촌1차 현대아파트, 의정부 금오 삼성싸이버아파트, 김포 고촌 한화아파트, 보라매 삼성쉐르빌, 부산 민락동 대우아파트, 광주 태전리 성원 상떼빌,신사동 한신이매진아파트(이상 7개 프로젝트)

(1) 심사 절차 및 방법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주관하에 관련분야 전문가「인력풀」을 구성(프로젝트별 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팀과 인증심의위원회 (5명)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절차 및 방법은 인증신청 치망 사업장에서의 준비단계를 거친 후, 심사팀의 문서심사 및 방문심사, 그리고 인증심의위원회의에서 최종 평점을 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평가항목

GB7(Green Building Challenge) GB Tool의 6개 분야 111개 평가항목중 국내의 적용가능성, 설계단계에서의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6개 분야 46개 항목을, 주상복합용건물의 경우는 6개 분야 60개 항목을 선정하여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시범인증에서 적용되는 각 평가분야별 반영비율과 주요 평가항목이다.

(3) 평가기준

그린빌딩 평가기준은 평가 항목별로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보통건물을 0점으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하상태를 -2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친화 건물 수준을 5점으로 하는 8등급 점수제로 되어 있다. 평가결과 항목별 평균점수가 3.0이상인 건축물을 그린빌딩으로 시범인증하고 있다.

나. 정책의 기본방향

그린빌딩인증제도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적 의미가 아니라 선도적 의미의 '자발적 참여형 인증시스템'으로 마련돼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환경친화성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이어야 하며, 국가경제와 최종 소비자인 건축물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과 복지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본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건축관련 산업계에 긍정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인증절차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인증결과는 최종 소비자가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추진중인 시범인증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그린빌딩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 자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가항목 선정과 평가방법, 그린빌딩 건축

및 운용기술 개발, 관련 법규 등의 문제는 산학 연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다. 정책방향

그린빌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인증사업을 통하여 인증시기와 대상건물 등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개발 등의 인증방법론 정립과 인증기관, 심사원, 인증심사절차 등의 운영체계 정립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작업 후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증형태를 단일마크제로 할 것인지 등급별 차별인증으로 할 것인지 등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인증로고와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준비작업 외에도 그린빌딩의 정확한 개념과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이용 홍보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그린빌딩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세부평가항목별로 심사원의 능력을 설정하고, 심사원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증제도를 운영하게 될 인증기관도 환경친화적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정보제공은 물론, 기술적 측면에서의 환경성능인증기준을 일정 주기로 갱신하여 기술 발전이나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5. 결론

새천년을 여는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아 건설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건축물을 설계하는 지금까지의 프로세스는 더 이상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물의 이미지, 공간계획, 건물 내 시스템의 결정, 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종래의 관념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욱이, 건축가나 관련 전문가들이 보다 나은 물리적 환경을 창조하고 그린빌딩을 구현하는데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면, 보다 변화된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패턴을 보여 주어야 하며 혁신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을 단순히 투기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안전과 에너지절약 차원만을 고려해 온 지난날의 관념은, 오늘날 〈지속가능개발〉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환경친화적 건물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그린빌딩성능평가는 건물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로서 그 기능이 부각될 것이며, 해당 건물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를 증폭시켜 건축과 건설관련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그린빌딩인증제도를 도입 정착시킴으로써, 새천년 친환경 건설산업으로의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경제와 환경을 함께 향상시키면서, 건물의 수명 기간동안 건물주와 운영자, 거주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린빌딩인증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